

경영재정과를 소개합니다 ~



- 경영재정과는 경리팀, 재산관리팀, 국공유지관리팀, 공공시설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35명이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경영재정과에서는 구의 공사 및 용역 계약, 물품계약 및 일반법정경비 지출과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및 청사 시설관리 업무,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다.
- 2007년도 경영재정과에서는 동청사 신축으로 논현고잔동청사, 만수1동청사를 준공하였으며 제19회 지방자치단체 경영행정혁신발표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였고, 2006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공유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 앞으로도 경영재정과 전 직원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청사 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완벽한 공공청사의 신축과 지방공기업의 내실 있는 경영향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 3 절 재정운용 - I

1. 경 리

가. 의 의

재무행정의 주요분야인 경리를 간략히 정의한다면, 경리란 금전, 물품, 재산 등의 출납, 보관, 관리 등을 일련의 조직하에 기술적으로 종합하여 연계적으로 배분하는 행위로서 예산회계법, 국가계약관계법, 지방재정법, 조례, 규칙 등의 회계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공공욕구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화, 용역을 조달·관리·사용하는데 따르는 모든 경제활동에 관한 경리 절차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예산과 결산,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지며 그 중 지출관리 계약 및 현금보관, 물품관리, 회계관리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경리관리는 그 집행에 있어 적법성과 공정성이 가장 요구되는 업무로서 대상 공무원은 전문성과 더불어 투철한 공직관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투명한 경리업무 확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나. 2007년도 추진실적

1) 각종 사업에 대한 발주계획 공개

- 대상사업 : 공사(3천만원), 용역(2천만원), 물품(1천만원이상)
- 공개실적 : 160건(공사 105, 용역 31, 물품 24)
- 공개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2) 전자입찰 운영실적

- 대상사업 : 예정가격 3천만원 이상
- 공 사 : 93건 13,943백만원
- 용 역 : 60건 4,140백만원
- 물 품 : 3건 352백만원

3)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천원)

회 계 별		세 결 산 액	세 결 산 액	잉 여 금 현 황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 조 금 사용내역	순세계 잉여금
합 계		278,725,922	201,256,678	77,469,244	19,288,735	4,236,262	0	4,241,436	49,702,811
일반회계		250,965,554	189,762,418	61,203,136	17,848,782	3,672,258	0	4,137,327	35,544,769
특 별 회 계	계	27,760,368	11,494,260	16,266,108	1,439,953	564,004	0	104,109	14,158,042
	의료보호기금	349,387	279,077	70,310	0	0	0	48,712	21,598
	주차장관리	6,304,659	3,077,119	3,227,540	1,253,353	0	0	55,397	1,918,790
	장수지구	3,097,585	423,306	2,674,279	186,600	40,156	0	0	2,447,523
	서창지구	13,259,398	4,502,693	8,756,705	0	375,746	0	0	8,380,959
	도립지구	4,749,339	3,212,065	1,537,274	0	148,102	0	0	1,389,172

다. 2008년도 추진계획

- 1) 공사 3천만원, 용역 2천만원, 물품 1천만원이상 대상사업에 대한 발주계획을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개
- 2) 공사는 1천만원이상, 용역·물품은 5백만원 이상 전자계약 추진
- 3) 공사 50억원, 용역·물품 10억원 이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자문·
심의 필요시 계약심의 위원회 운영
- 4) 3천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공사이행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

2. 재산관리

가. 물품관리

1) 목 적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수물품의 운용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다 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 물자·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있다.

2) 재물현황

(단위 : 개/천원)

구 분	총 계	구 본 청	의 회	동사무소	보 건 소	출 장 소
수 량	4,530	1,956	125	2,084	281	84
금 액	11,575,380	7,950,382	252,876	2,324,916	883,474	163,732

3) 2007년도 추진실적

- 행정복사기 임차 추진 : 37개소 51대
- 불용물품 처리
 - 관용차량 매각 : 봉고프런티어외 5대 17,821천원
 - 일반 불용물품 매각 : 20개 품목 7,732천원

4) 2008년도 추진계획

- 정기재물조사를 통한 변동 물품의 정확한 실태 파악, 불용물품의 신속 처분
- 물품의 규격화를 통한 물품관리 효율성 증대

나. 차량관리

지역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행정수요와 민원이 증가하고 정보 전달매체 발달로 주민의 요구사항이 실시간 소통됨에 따라 이에 신속히 대응하고 『밝은 미래 푸른 도시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도시환경 정비·녹지 공간 조성·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지원 및 사업용 차량을 보유·운영하고 있음. 최적의 현장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 규격·용도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운행 체계와 사용연한의 연장을 위해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안전운행을 위해 안전교육에도 힘쓰고 있음.

1) 차량보유현황

(단위:대)

기 관	차 종	계	승용	승합	화물	특 수 차					비고	
						청소차	사 다 리 차	농 립 방 재	앰블 런스	냉동차		급 수 살수차
	계	79	15	11	37	8	1	1	2	1	3	
	본 청	53	11	11	16	8	1	1	1	1	3	
	보건소	4	1		2				1			
	출장소	3	1		2							
	의 회	2	2									
	동	17			17							

다. 청사관리

1) 구청사

구청사의 실용적, 미관적 설계로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에게 넓은 주차공간, 편리한 종합민원실 운영 등으로 주민

편의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 구청사 일반현황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 대지면적 : 27,911.4m² (8,443평)
- 본 청 사 : 연면적 21,573m² (6,525평)
 - 본 동 : 지하1층 지상7층
 - 민원실 : 지상2층
- 의회청사 : 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3,630m² (1,098평)

나) 보건소 일반현황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 대지면적 : 4,290m² (1,297평)
-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 건물연면적 : 2,595m² (784평)

2) 동청사

주민을 위한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는 17개 동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다.

가) 동청사현황

(단위 : m²)

구 분 동 별	소 재 지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구조	건 축 일	비 고
구 월 1 동	구월동 1214-5	992	985.11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94.12.05	
구 월 2 동	구월동 23	1,013	1,738.96	"	'06. 4월	
구 월 3 동	구월동 1098-7	919.2	1,321.9	"	'92.12.17	
구 월 4 동	구월동 1296-6	667.2	957	"	'94.12.24	
간 석 1 동	간석동 353-4	998.3	1,525.36	"	'93.06.10	
간 석 2 동	간석동 206-2	582.3	632.1	"	'85.12.31	
간 석 3 동	간석동 49-1	1,003	754.31	"	'84.11.15	
간 석 4 동	간석동 575-17	679.4	820.4	"	'92.01.16	
만 수 1 동	만수동 983-5	1,160	1,984.4	"	'07.11월	
만 수 2 동	만수동 869-14	1,265	850.1	"	'95.06.12	
만 수 3 동	만수동 847-1	1,559.7	2,353	"	'05. 4월	
만 수 4 동	만수동 21	1,206.2	1,238.76	"	'95.06.12	
만 수 5 동	만수동 876	1,157.2	1,395.25	"	'93.03.19	
만 수 6 동	만수동 1020	887.5	1,110.29	"	'94.12.12	
장수서창동	서창동 350	1082.5	1567.9	"	'05. 11월	
남촌도림동	남촌동 354-1	826	1,151.9	"	'92.12.21	
논현고잔동	논현동 633-3	1,403	1,554.9	"	'07. 9월	

3) 동청사 신축사업 추진

○ 목 적 : 노후된 동청사 신축을 통해 주민편익 우선의 현대적 기능의 민원 환경과 주민자치센터 확보

○ 그동안 추진사항

- 공사완료 : 만수3동사무소, 장수서창동사무소, 구월2동사무소, 만수1동사무소, 논현고잔동사무소

- 추진내역 (단위 : m²/백만원)

구 분	위 치	면 적		사 업 비			규 모
		대 지	연면적	계	토 지	건립비	
장 수 서창동	서창동 350	1,082.5m ² (328평)	1,567.9m ² (474.2평)	2,968	905	2,063	지하1 지상3
구월2동	구월2동 23	1,013m ² (306평)	1,738.96m ² (526.9평)	2,099	무상 귀속	2,099	지하1 지상4
만수3동	만수3동 847-1	1,559.7m ² (483.9평)	2,353m ² (711.7평)	3,564	1,097	2,467	지하1 지상3

○ 2007년 추진사항 (단위: 백만원)

구 분	위 치	사 업 비			사 업 기 간	추 진 사 항
		계	토지매입비	건립비		
논 현 고잔동	논현동 633-3	3,590	1,300	2,290	2005년~ 2007년	06. 8월 : 설계준공 07. 9월 : 공사준공
만수1동	만수동 983-5	3,072	현부지내	3,072	2005년~ 2007년	06.12월 : 설계준공 07.11월 : 공사준공

○ 향후 추진계획

- 청사노후에 따른 재신축 예정 : 간석2동사무소, 간석3동사무소, 만수2동사무소
- 대단위사업개발에 따른 분동 : 논현2동사무소, 고잔동사무소

3. 국공유지관리

가. 국·공유 잡종재산의 의의

- 1) 잡종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서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대물변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재산이다.
- 2)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1조에 규정된 재산이다.
즉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에 의하여 국유

로 된 것을 말한다.

- 토지·건물등의 부동산과 그 중물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중물
-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
발신탁의 수익증권,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3)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나. 국유잡종재산 관리

재정경제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관리권이 위임된 국유잡종재산을 효율적으로 관
리·보존코자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활용으로 누락된 재산의 발굴,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07년도 재산증감내역은 한화택지개발(손실보상) 매각 등으로 2007년말 현재 292
필지 216,888㎡로 전체적으로 2006년 대비 필지수는 8필지, 면적은 28,825㎡ 감소하였다.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대부료 95건 508,135천원, 매각대금 5필
지 370,289천원, 변상금 28건 102,757천원을 징수하여 총 981,181천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다.

1) 2007년도 국유재산 현황 (단위 : 필지, m²)

지 목	필 지	면 적	비 고
계	292	216,888	
일반토지	292	216,888	

2) 2007년도 국유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m²)

구 분	계		대 부			변상금 부과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금 액	필지	면 적	금 액
국유재산	123	56,941	95	41,341	508,135	28	15,600	102,757

다. 공유잡종재산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적 수입원으로 잡종재산은 공유지 82필지 8,033㎡, 시유지 114필지 46,235㎡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대부분 78건 43,682천원, 매각대금 3필지 6,050,000천원, 변상금 27건 37,079천원을 징수하여 총 6,130,761천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다.

1) 2007년도 공유재산 현황

(단위 : 필지, ㎡)

구 분	재 산 별	잡 종 재 산	
		공 유 지	시 유 지
필 지		82	114
면 적		8,033	46,235

2) 2007년도 공유재산(시·공유지) 대부 및 변상금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계		대 부			변상금 부과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금 액	필 지	면 적	금 액
공유 재산	78	6,470	41	4,824	43,682	37	1,646	37,079

라. 유희재산 발굴 및 세외수입 증대 추진 방안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정기 : 2008. 4. 1 ~ 2008. 7. 31 및 수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자 색출, 유희지 및 은닉재산 발굴 작업
-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독려 및 압류 등 조치강구
-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매각 추진 검토 및 대체재산 조성

세무1과를 소개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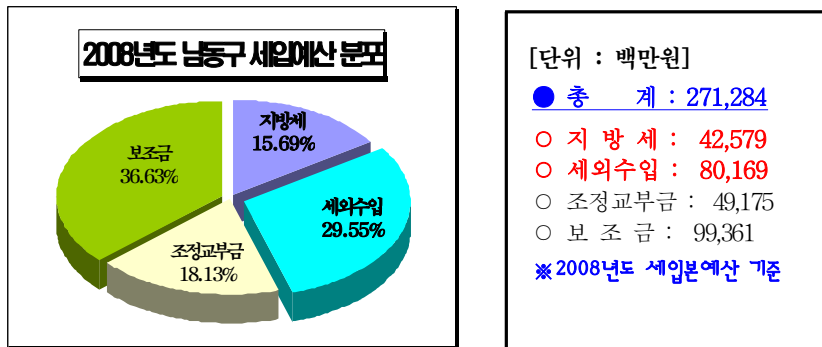


- 세무1과는 구세정팀, 재산세팀, 주택평가팀 및 체납정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27명이 남동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세 부과징수, 지방세 체납정리, 세외수입 및 개별주택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세무1과에서는 우리 남동구 자주재원인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 사업소세 부과징수 업무, 면허세 부과징수 업무,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 지방세(구세) 관련 조례·규칙개정 업무, 남동구 세외수입 총괄업무, 남동구 일반회계 자금배정 업무,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구세 부과 불복에 대한 구제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 2007년도 세무1과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를 제고 및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전 직원 체납액 총력 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여 건전한 재정확립 및 공평세정을 구현하였으며, 2007년도 인천시 지방세징운영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수상하였다.
- 앞으로도 세무1과 전 직원은 「신뢰세정」, 「합리세정」, 「열린세정」의 추진목표 아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총체적인 구세 징수노력을 경주하며, 건전재정운동을 위한 세외수입 총력 징수 및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만족 행정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남동구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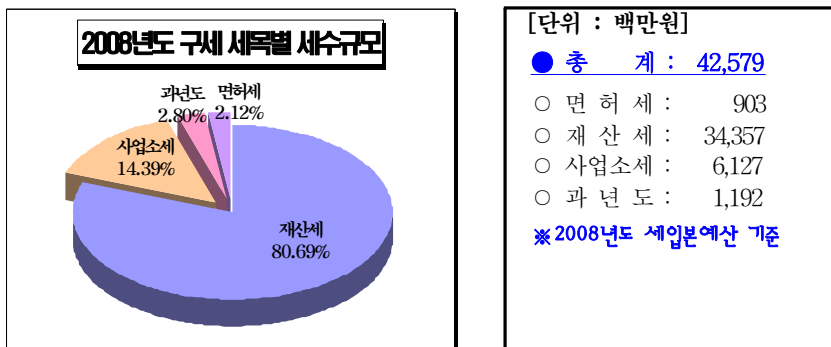
제 3 절 재정운용 - II

1. 2008년도 남동구 세입예산 및 세수규모

가. 2008년도 남동구 세입예산 규모



나. 2008년도 남동구 지방세(구세) 세목별 세수규모



2. 지 방 세

가. 지방세의 특징

지방세는 국가로부터 수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당해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 출범으로 행정주체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는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이며, 사용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며, 보통세는 위생, 교통, 청소, 교육, 문화, 예술진흥 등 일반적인 사업에, 목적세는 도시계획, 소방시설, 환경개선 등 특정목적에 사용된다.

나. 지방세의 분류

지방세는 16개 세목으로 시세(13개 세목), 구세(3개 세목)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목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 구세(세무1과) ⇒ 보통세 : 면허세, 재산세

⇒ 목적세 : 사업소세

○ 시세(세무2과) ⇒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 목적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다. 지방세(구세) 주요 세목별 성질

1) 면 허 세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검사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에 따른 수수료적 성격의 지방세로 지방세법상 별표에 열거된 대상을 과세객체로 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2년 이상이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기분 면허세를 과징하고 있다.

2) 재 산 세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유세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7월에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부과하고, 9월에 토지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부과하며, 각각의 재산세에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3) 사업소세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이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재산할 사업소세가 있다.

사업소세 납부기준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종업원할은 매월 종업원 50인 초과,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3. 2007년도 지방세정 운영

가. 지방세정 운영방향

2007년도 지방세정 운용의 기본방향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제도의 건실한 운영 및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세에 대하여 인천시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 직원 체납액 총력 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이루어 건전한 재정확립 및 공평세정 구현에 노력하였다.

열린 지방세정 구현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납세자권리헌장, 과세 전적부심사제도, 수정신고 납부제도 등에 대한 착실한 이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노력하였다.

지방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하여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활동 강화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였고 세무조사활동의 과학화 추진을 위해 자료관리의 전산화에 노력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바람직한 지방세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세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 참여와 세정업무에 대한 직원 상호간의 업무연찬을 실시하였다.

나. 지방세 부과징수

2007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97,452백만원을 부과하여 383,165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시세·구세 및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1) 2007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2008.2.29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C)	비 율		
					(C/A)	(C/B)	
합 계	계		300,625	397,452	383,165	127.5	96.4
	시 세		261,418	352,827	342,904	131.2	97.2
	구 세		39,207	44,625	40,261	102.7	90.2
현 년 도	계		298,412	392,154	382,586	128.2	97.6
	시 세	소 계	260,368	351,397	343,438	131.9	97.7
		취 득 세	69,251	114,121	112,651	162.7	98.7
		등 록 세	63,692	93,350	93,332	146.5	99.9
		주 민 세	64,998	66,559	64,974	100.0	97.6
		자 동 차세	17,075	21,391	18,480	108.2	86.4
		도시계획세	18,789	20,488	19,910	106.0	97.2
		공동시설세	6,318	6,591	6,354	100.6	96.4
		지역개발세	6	5	5	83.7	93.2
		지방교육세	20,239	28,892	27,732	137.0	96.0
	구 세	소 계	38,044	40,757	39,148	102.9	96.1
		면 허 세	885	984	927	104.6	94.2
		재 산 세	31,096	33,312	31,796	102.3	95.4
		종합토지세	0	8	8	-	99.3
		사 업 소세	6,063	6,453	6,417	105.8	99.4
과 년 도	계		2,213	5,298	579	26.2	10.9
	시 세		1,050	1,430	-534	-50.8	-37.3
	구 세		1,163	3,868	1,113	95.7	28.8

2) 연도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목 표 액	213,717	233,721	245,962	300,625
부 과 액	261,292	278,045	327,788	397,452
징 수 액	207,449	224,535	284,740	383,165

다. 지방세정 운영

1) 전자납부제도의 확대 운영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한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인 e-tax 서비스를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다.

2) 지방세 민원업무 처리 개선

인터넷사용 보편화에 따른 지방세 민원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 홈페이지에 지방세 사이버민원 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합리적인 민원 처리로 신뢰제정을 실천하였다.

3) 세무행정서비스 현장의 적극 이행

납세자의 권익보장과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세무행정서비스」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세무행정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적극 실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여 고객만족 세정구현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성실히 이행하였다.

4) 지방세 납세홍보 활동 강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적극적인 지방세 납세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실천함은 물론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은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등 공공사업과 주민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점을 널리 알려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배부, 납세홍보물 유인 배부, 반상회보 게재, 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강화, 지방세 납기전 미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구민을 존중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세무행정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5)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전직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재산압류 및 공매, 신용불량등록, 급여·보험금 및 예금압류,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과년도 구세 체납액 3,868백만원중 28.8%인 1,113백만원을 징수,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6) 지방세 세무조사 활동 강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여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성실 신고납세자, 탈세의혹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탈루세원을 근절하였으며, 정책세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 제도 및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4. 2008년 지방세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7년 목표액(A)	2008년 목표액(B)	증 감 (B-A)	비 율 (B/A)	
계	계	300,625	311,393	10,768	103.6	
	시 세	261,418	268,814	7,396	102.8	
	구 세	39,207	42,579	3,372	108.6	
현 년 도	계	298,412	309,345	10,933	103.7	
	시	소 계	260,368	267,958	7,590	102.9
		취 득 세	69,251	67,150	-2,101	97.0
		등 록 세	63,692	71,313	7,621	112.0
		주 민 세	64,998	62,713	-2,285	96.5
		자동차세	17,075	17,045	-30	99.8
	세	농업소득세	0	0	0	-
		도시계획세	18,789	21,051	2,262	112.0
		공동시설세	6,318	6,625	307	104.9
		지역개발세	6	7	1	116.7
		지방교육세	20,239	22,054	1,815	109.0
	구 세	소 계	38,044	41,387	3,343	108.8
		면 허 세	885	903	18	102.0
		재 산 세	31,096	34,357	3,261	110.5
		종합토지세	0	0	0	-
		사업소세	6,063	6,127	64	101.1
과 년 도	계	2,213	2,048	-165	92.5	
	시 세	1,050	856	-194	81.5	
	구 세	1,163	1,192	29	102.5	

5. 세외수입

가. 세외수입의 의의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 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방세수의 확충은 조세저항, 부동산 경기침체로 그리 쉽지 아니한 반면 지방재정이 점차 경영재정화하고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의 개발·확충 등으로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지방재정상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나. 세외수입의 특징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 등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분되어 진다.

- 첫 째,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다.
- 둘 째, 세외수입은 종류가 매우 많고 또 수입근거와 형태가 몹시 다양하다.
- 셋 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발굴되는 수입이긴 하나, 그 수입원의 법적근거에 따라 그 사용되는 곳이 특정되어 있는 것도 있다.
- 넷 째, 세외수입의 징수형태로는 현금으로 징수(금고납부)하는 것 외에 수입증지나 금권으로 징수하는 것이 있다. 수입증지나 금권은 주로 그 건당 수입금액이 영세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징수 시에 이용되고 있지만, 최근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점차 고액권종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 다섯째, 세외수입은 주로 특정인의 공물사용 및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 급부 또는 대가이므로 조세와는 달리 국민저항이 비교적 작다는 점이다.

다. 2007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1) 2007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

【2008.2.29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징수액	불 납 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계		52,228	97,478	71,981	104	25,393	73.8
경 상 적 수 입	소 계	23,384	25,034	24,932	0	102	99.6
	재산임대수입	388	336	317	0	19	94.3
	사용료수입	1,313	1,417	1,345	0	72	94.9
	수수료수입	7,920	8,146	8,145	0	1	99.9
	사업 수입	1,881	1,466	1,466	0	0	100
	징수교부금	10,831	12,354	12,344	0	10	99.9
	이자 수입	1,051	1,315	1,315	0	0	100
임 시 적 수 입	소 계	28,844	72,444	47,049	104	25,291	64.9
	재산매각수입	6,088	6,096	6,084	0	12	99.8
	순세계잉여금	13,254	13,254	13,254	0	0	100
	이 월 금	1,387	18,923	18,923	0	0	100
	전 입 금	1,500	1,500	1,500	0	0	100
	부 담 금	3,601	1,099	1,037	0	62	94.4
	잡 수 입	2,332	10,678	5,434	0	5,244	50.9
	과년도수입	682	20,894	817	104	19,973	3.9

라. 세외수입 증대 추진 방안

- 1) 수수료·사용료 효율의 현실화 추진
- 2) 세외수입 채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
- 3) 세외수입 업무연찬 및 업무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마. 2008년 세외수입 징수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7년 목표액(A)	2008년 목표액(B)	증 감 (B-A)	비 율 (B/A)
계		52,228	80,168	27,940	153.5
소 계		23,384	21,741	-1,643	93.0
경 상 적 수 입	재산임대수입	388	325	-63	83.8
	사용료수입	1,313	1,455	142	110.8
	수수료수입	7,920	8,287	367	104.6
	사업 수입	1,881	1,805	-76	96.0
	징수교부금	10,831	8,812	-2,019	81.4
	이자 수입	1,051	1,057	6	100.6
소 계		28,844	58,427	29,584	202.6
임 시 적 수 입	재산매각수입	6,088	36,035	29,947	591.9
	순세계잉여금	13,254	15,000	1,746	113.2
	이 월 금	1,387	1,400	13	100.9
	전 입 금	1,500	0	-1,500	0
	부 담 금	3,601	3,502	-98	97.3
	잡 수 입	2,332	1,906	-426	81.7
	과년도수입	682	584	-98	85.6

세 무 2 과 를 소개합니다 ~



- 세무2과는 시세정팀, 취득등록세팀, 주민세팀, 자동차세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26명이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시세) 부과·징수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 계획수립 및 징수전망, 지방세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세정자료의 조사와 세표 작성 및 통계, 지방세 집계 및 수납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 과오납금에 관한 사항, 지방세 제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다.
- 2007년도 세무2과에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경비의 재원을 확충하고자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차질없는 세수확보를 하였으며 정확한 과세자료의 정비와 철저한 세원관리로 공평과세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홍보강화로 자발적인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특히 납부민원을 위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과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운영하여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였다.
- 앞으로 세무2과에서는 전 직원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우수한 시책의 도입 및 발굴을 추진하여 납세편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정운영으로 공평한 세무행정을 이룩하여 선진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 3 절 재정운용 - III

1. 지방세

가. 지방세의 특징

지방세는 국가로부터 수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당해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 출범으로 행정주체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는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이며, 사용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며, 보통세는 위생, 교통, 청소, 교육, 문화, 예술진흥 등 일반적인 사업에, 목적세는 도시계획, 소방시설, 환경개선 등 특정목적에 사용된다.

나. 지방세의 분류

지방세는 16개 세목으로 시세(13개 세목), 구세(3개 세목)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목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 시세(세무2과) ⇒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 목적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구세(세무1과) ⇒ 보통세 : 면허세, 재산세
⇒ 목적세 : 사업소세

다. 지방세(시세) 주요 세목별 성질

1) 취 득 세

재산권의 유통과정에서 재산권의 취득시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세금으로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자 및 건물의 증·개축,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행위자에게 부과된다.

2) 등 록 세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과세되며, 권리를 보호해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이다.

3) 주 민 세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8월 1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된다.

- (1) 소득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법인세액 및 농업소득세액의 10%이며
- (2) 지방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인 균등할(개인·법인·사업장할) 주민세는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기여도가 가장 잘 부각된 세목이다.

4)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도 포함된 세금으로 매년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 (1)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하며,
 - 제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용분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기로 부과
 - 제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로 부과
- (2) 2001년 7월 1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등과세제도가 도입되어 비영업용 승용차량구입(등록기준일)후 3년 경과시부터 매년 5%씩 체감하여 차령 12년 이상 경과시 50%(한도)까지 경감
- (3) 소유권 이전 등록시 신청하던 일할계산 신청이 폐지되고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부과

2. 2007년도 지방세정 운영

가. 지방세정 운영방향

2007년도 지방세정 운용의 기본방향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제도의 건실한 운영 및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세에 대하여 인천시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

획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 직원 체납액 총력 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이루어 건전한 재정확립 및 공평 세정 구현에 노력하였다.

열린 지방세정 구현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납세자권리현장, 과세 전적부심사제도, 수정신고 납부제도 등에 대한 착실한 이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노력하였다.

지방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하여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활동 강화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였고 세무조사활동의 과학화 추진을 위해 자료관리의 전산화에 노력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바람직한 지방세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세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 참여와 세정업무에 대한 직원 상호간의 업무연찬을 실시하였다.

나. 지방세 부과징수

2007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97,452백만원을 부과하여 383,165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시세·구세 및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1) 2007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2008.2.29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C)	비 율	
					(C/A)	(C/B)
합 계	계	300,625	397,452	383,165	127.5	96.4
	시 세	261,418	352,827	342,904	131.2	97.2
	구 세	39,207	44,625	40,261	102.7	90.2
현 시	계	298,412	392,154	382,586	128.2	97.6
	소 계	260,368	351,397	343,438	131.9	97.7
	취 득 세	69,251	114,121	112,651	162.7	98.7
	등 록 세	63,692	93,350	93,332	146.5	99.9
	주 민 세	64,998	66,559	64,974	100.0	97.6
	자 동 차세	17,075	21,391	18,480	108.2	86.4
	도시계획세	18,789	20,488	19,910	106.0	97.2
	공동시설세	6,318	6,591	6,354	100.6	96.4
	지역개발세	6	5	5	83.7	93.2
	지방교육세	20,239	28,892	27,732	137.0	96.0
	구 소 계	38,044	40,757	39,148	102.9	96.1
	면 허 세	885	984	927	104.6	94.2
	재 산 세	31,096	33,312	31,796	102.3	95.4
	종합토지세	0	8	8	-	99.3
	사 업 소세	6,063	6,453	6,417	105.8	99.4
과 년 도	계	2,213	5,298	579	26.2	10.9
	시 세	1,050	1,430	-534	-50.8	-37.3
	구 세	1,163	3,868	1,113	95.7	28.8

2) 연도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목 표 액	213,717	233,721	245,962	300,625
부 과 액	261,292	278,045	327,788	397,452
징 수 액	207,449	224,535	284,740	383,165

다. 지방세정 운영

1) 전자납부제도의 확대 운영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한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인 e-tax 서비스를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다.

2) 지방세 민원업무 처리 개선

인터넷사용 보편화에 따른 지방세 민원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 홈페이지에 지방세 사이버민원 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합리적인 민원처리로 신뢰세정을 실천하였다.

3) 세무행정서비스 현장의 적극 이행

납세자의 권익보장과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세무행정서비스」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세무행정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적극 실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여 고객만족 세정구현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성실히 이행하였다.

4) 지방세 납세홍보 활동 강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적극적인 지방세 납세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실천함은 물론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은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등 공공사업과 주민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점을 널리 알려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배부, 납세홍보물 유인 배부, 반상회보 게재, 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강화, 지방세 납기전 미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구민을 존중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세무행정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5)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전직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재산압류 및 공매, 신용불량등록, 급여·보험금 및 예금압류,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과년도 구세 체납액 3,868백만원중 28.8%인 1,113백만원을 징수,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6) 지방세 세무조사 활동 강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여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성실 신고납세자, 탈세의혹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탈루세원을 근절하였으며, 정책세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 제도 및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3. 2008년 지방세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7년 목표액(A)	2008년 목표액(B)	증 감 (B-A)	비 율 (B/A)		
계	계	300,625	311,393	10,768	103.6		
	시 세	261,418	268,814	7,396	102.8		
	구 세	39,207	42,579	3,372	108.6		
현 년	계	298,412	309,345	10,933	103.7		
	시	소 계	260,368	267,958	7,590	102.9	
		취 득 세	69,251	67,150	-2,101	97.0	
		등 록 세	63,692	71,313	7,621	112.0	
		주 민 세	64,998	62,713	-2,285	96.5	
		자동차세	17,075	17,045	-30	99.8	
	세	농업소득세	0	0	0	-	
		도시계획세	18,789	21,051	2,262	112.0	
		공동시설세	6,318	6,625	307	104.9	
		지역개발세	6	7	1	116.7	
		지방교육세	20,239	22,054	1,815	109.0	
	도	구 세	소 계	38,044	41,387	3,343	108.8
		면 허 세	885	903	18	102.0	
		재 산 세	31,096	34,357	3,261	110.5	
		종합토지세	0	0	0	-	
사업소세		6,063	6,127	64	101.1		
과 년 도	계	2,213	2,048	-165	92.5		
	시 세	1,050	856	-194	81.5		
	구 세	1,163	1,192	29	102.5		